

2020년도 제7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자: 2020. 5. 8.(금요일)
- 방 법: 온라인심의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김경숙 위원(분과위원장), 박정인 위원, 최승수 위원, 최현용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의결안건〉 ※ 안건 검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II. 회의내용 및 결과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62건(안건번호 제2020-20132호~20191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주요내용

- A 위원: 상기 안전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가결함. 다만 이미 전송이 중단되었거나 삭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해야할 것임.

- B 위원: 안전번호 제2020-20132호~20191호(62건)은 불법 복제한 영상 저작물(영화)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본 사건은 웹하드사이트(▲▲▲▲▲, ▽▽▽▽ 등)에 불법복제물(영화)들을 불법 공중송신한 사건으로 당해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의견임.

- D 위원: 본 심의대상 안전 복제물들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15개의 상업용 웹하드형 온라인서비스에 게시된 62건의 최신 영화 복제물들로서 창작자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에 해당함. 그러나 이들 영화들은 모두 최신 상영작들로서 복제 전송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들이 영리 목적의 온라인서비스에 게시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여짐. 그 결과 저작권자가 얻어야 할 경제적 수익을 박탈함으로써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어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복제 전송의 중단과 삭제의 시정권고가 필요함. 다만, 이미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

고만이 타당함.

2020년 제73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5. 8.

분과위원장 김경숙

위원 박정인

위원 최승수

위원 최현용